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3. 7. 20.>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조합명·사후관리업자명·농업기계 수출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소유자 변경일		
중고거래 대상 농업기계 제원	기종명		형식명(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출일자	
종전 소유자	성명(상호명 및 대표자)		국내 거래	성명 또는 상호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출	농업기계 수출업자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7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